

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2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,
- 상위법과 충복되어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,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7조 제2항 삭제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1. 11. ~ 2018. 1. 3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3
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 불임 1 >

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
2.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
3.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전사회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안전사회지원과장 정 송 자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민방위계장 이 길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은 경 (행정 3165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</u></p> <p><u>2.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</u></p> <p><u>3.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u>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</u></p> <p><u>2.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</u></p> <p><u>3.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</u></p>

< 불임 3 >

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(현행)

(제정) 2001.01.12 조례 제 948호

(일부개정) 2002.10.08 조례 제1033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
(일부개정) 2003.07.29 조례 제1080호

(일부개정) 2016.01.11 조례 제196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1.>

제2조(위치) 안산시 민방위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.

[본조개정 2016.1.11.]

제3조(시설의 범위 및 기능)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 <본항신설 2016.1.11.>

1. 사무실 및 강당
2. 재난체험장
3.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

②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 <본항개정 2016.1.11>

1. 민방위대원의 교육·훈련
2.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
3.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
4.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

[제목개정 2016.1.11.]

제4조(교육장의 사용허가) ①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1.11.>

②교육장의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의한다. 다만,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④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안산시금고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.<개정2003.07.29>

제5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1.>

1. 민방위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 2.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
 3.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4. 그 밖에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- <개정 2016.1.11.>

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1>

1. 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
2.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
3.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

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<개정 2016.1.11.>

제8조(사용자의 권리 등) ①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·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6.1.11.>

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1.>

제9조(권리의 양도금지)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6.1.11.>

제10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1.>

제11조(준용) 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『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1.11.>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11.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10.08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
부 칙(2003.07.2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.11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